



#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10. 8.11] [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, 2010. 8.11, 제정]  
농림수산식품부 (소비안전정책과)02-500-2097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통신판매의 범위)**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광고물·광고시설물·방송·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.

**제3조(원산지의 표시방법)**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

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1.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: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,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 것
2.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: 별표 4에 따른 것



**제4조**(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)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.

**제5조**(증표)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**부칙 <제41호, 2010. 8.11>**

**제1조**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(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「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4조 또는 종전의 「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(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)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.

**제3조**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,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4조의5의 제목“(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·조사의 방법 등)”을“(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

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·조사의 방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44조제2항제1호 중 “지리적표시, 원산지표시”를 “지리적표시”로 한다.

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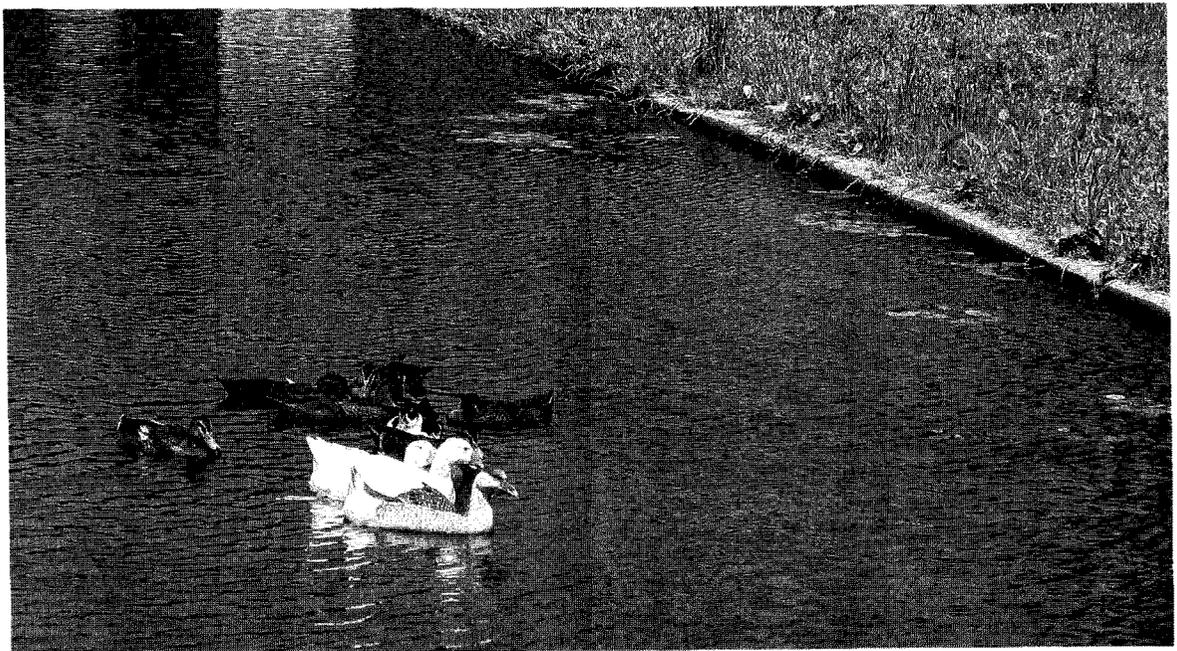
제22조, 제23조,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“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”을 “유전자변형수산물”로 한다.

제73조제2항제1호 중 “지리적표시, 원산지표시”를 “지리적표시”로 한다.

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“식육의 종류·원산지”를 “식육의 종류”로 하고, 같은 목 후단 중 “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”를 “식육의 종류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“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”를 “식육부산물의 종류”로 한다.



## 별표 1

##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(제3조제1호 관련)

## 1. 적용대상

- 가.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
- 나.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

## 2. 표시방법

## 가.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

- 1) 위치: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.
- 2) 문자: 한글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.
- 3) 글자 크기
  - 가) 포장 표면적이 3,000cm<sup>2</sup> 이상인 경우: 20포인트 이상
  - 나) 포장 표면적이 50cm<sup>2</sup> 이상 3,000cm<sup>2</sup> 미만인 경우: 12포인트 이상
  - 다) 포장 표면적이 50cm<sup>2</sup> 미만인 경우: 8포인트 이상. 다만,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.
- 라) 가), 나) 및 다)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. 다만, 「식품위생법」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·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.
- 4) 글자색: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.
- 5) 그 밖의 사항
  - 가)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·각인·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,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.
  - 나)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,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.

## 나.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(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)

- 1) 풋말, 안내표시판, 일괄 안내표시판,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.
  - 가) 풋말: 가로 8cm×세로 5cm×높이 5cm 이상
  - 나) 안내표시판
    - (1) 진열대: 가로 7cm×세로 5cm 이상
    - (2) 판매장소: 가로 14cm×세로 10cm 이상
    - (3) 「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세부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  - 다) 일괄 안내표시판
    - (1) 위치: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    - (2) 크기: 나(2)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,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.

라) 상품에 붙이는 스티카 가로 3cm×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.5cm 이상이어야 한다.

2) 문자: 한글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다.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

1) 보관시설(수족관, 활어차랑 등)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(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한다)하고, 낚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.

2)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,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3) 문자는 한글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**별표 2**

**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(제3조제4호 관련)**

**1. 적용대상**

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

**2. 표시방법**

가.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

1) 위치: 「식품위생법」 제10조 및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. 다만,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.

2) 문자: 한글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3) 글자 크기

가) 포장 표면적이 3,000cm<sup>2</sup> 이상인 경우: 20포인트 이상

나) 포장 표면적이 50cm<sup>2</sup> 이상 3,000cm<sup>2</sup> 미만인 경우: 12포인트 이상

다) 포장 표면적이 50cm<sup>2</sup> 미만인 경우: 8포인트 이상. 다만,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.

라) 가, 나) 및 다)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. 다만, 「식품위생법」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·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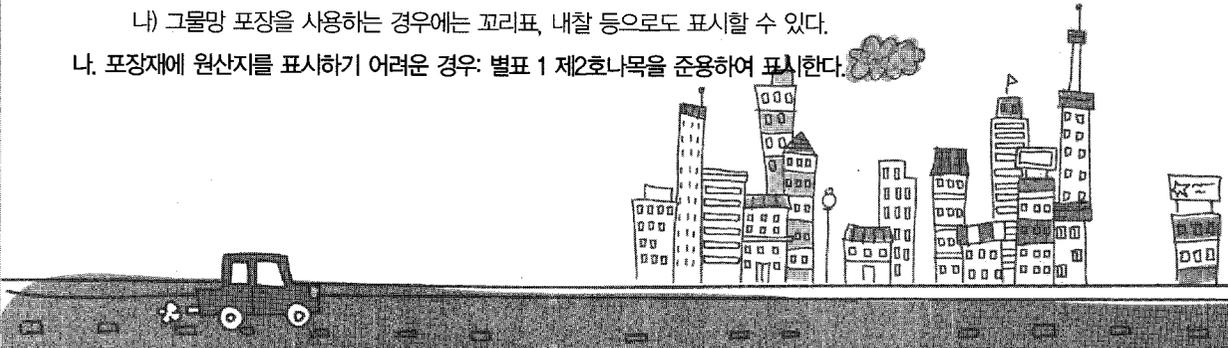
4) 글자색: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.

5) 그 밖의 사항

가)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·각인·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,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.

나)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,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.

나.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: 별표 1 제2호나목을 준용하여 표시한다.



## 별표 3

##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(제3조제1호 관련)

## 1. 일반적인 표시방법

- 가. 표시는 한글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나.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·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,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.
- 다.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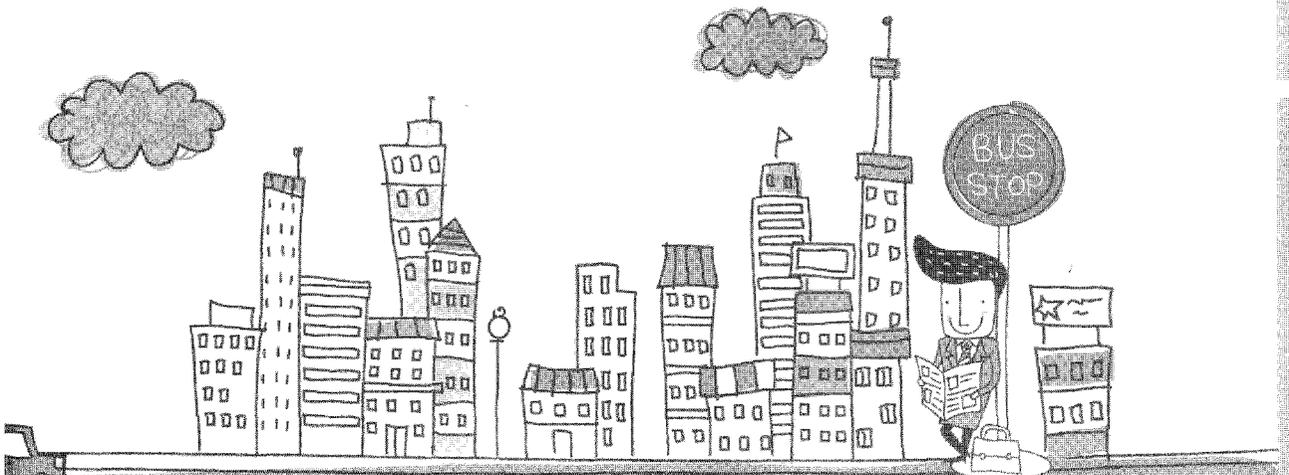
## 2. 개별적인 표시방법

## 가. 전자매체 이용

- 1)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(인터넷, PC통신, 케이블TV, IPTV, TV 등)
- 가) 표시 위치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할 수 있다.
- 나) 표시 시기: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.
- 다) 글자 크기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.
- 라) 글자색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.
- 2)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(라디오 등)
-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.

## 나. 인쇄매체 이용(신문, 잡지 등)

- 1) 표시 위치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,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.
- 2) 글자 크기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/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,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제2호(가목3)의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.
- 3) 글자색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.



##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(제3호제2호 관련)

### 1. 일반적인 표시방법

#### 가.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

- 1)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, 그 밖에 풋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메뉴판·게시판 또는 풋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.
- 2)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1/2 이상으로 한다.

#### 나.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

식당이나 취식(取食) 장소에 월간 메뉴표, 메뉴판, 풋말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, 교육·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.

- 다. 장례식장, 예식장, 병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·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풋말, 게시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.
- 라.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- 마.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[예시]

- 우리 업소에서는 “국내산 쌀”만 사용합니다.
- 우리 업소에서는 “국내산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”만 사용합니다.
- 우리 업소에서는 “국내산 한우 쇠고기”만 사용합니다.
- 우리 업소에서는 “덴마크산 돼지고기”만 사용합니다.

### 2.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

축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(이하 “국내산”이라 한다)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,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.

#### 가. 쇠고기

- 1) 국내산의 경우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하고, 식육의 종류를 한우, 젓소,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. 다만,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하되,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.

[예시] 소갈비(국내산 한우), 등심(국내산 육우), 소갈비(국내산(육우, 호주산))

- 2)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.

[예시] 소갈비(미국산)

- 3)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.

[예시] 갈비탕(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), 설렁탕(육수 국내산 한우, 고기 호주산),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(接着)한 경우: 소갈비(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을 섞음) 또는 소갈비(호주산)

#### 나. 돼지고기·닭고기·오리고기

1) 국내산의 경우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한다. 다만,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,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하되,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.

[예시] 삼겹살(국내산), 삼계탕(국내산), 훈제오리(국내산)삼겹살 국내산(돼지, 덴마크산), 삼계탕 국내산(닭, 프랑스산), 훈제오리 국내산(오리, 중국산)

2)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.

[예시] 삼겹살(덴마크산), 삼계탕(중국산), 훈제오리(중국산)

3)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.

[예시] 고추장불고기(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)닭갈비(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), 오리불고기(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)

**다. 배달을 통하여 판매·제공되는 닭고기**

1) 닭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. 다만,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,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.

2) 1)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.

[예시] 찜닭(국내산), 양념치킨(브라질산)

**3. 쌀(찜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원산지 표시방법**

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,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.

가. 국내산의 경우 “쌀(국내산)”로 표시한다.

나.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.

[예시] 쌀(미국산)

다.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,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.

[예시] 쌀(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)

**4.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**

가.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경우에는 “배추김치”로 표시하고, 그 옆에 괄호로 “배추 국내산”을 함께 표시한다.

[예시] 배추김치(배추 국내산)

나. 수입산 배추(절인 배추를 포함한다)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경우에는 “배추김치”로 표시하고,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.

[예시] 배추김치(배추 중국산)

다. 외국에서 제조·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.

[예시] 배추김치(중국산)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,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.

[예시] 배추김치(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)

**5. 그 밖의 공통사항**

가.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.

[예시] 햄버그스테이크(쇠고기: 국내산 한우, 돼지고기: 덴마크산)

나. 국내산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명이나 시·군·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다. 쇠고기·돼지고기·닭고기·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. 다만,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.

[예시] 햄버거(쇠고기: 국내산), 양념불고기(쇠고기: 호주산)

별표 5

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(제4조 관련)

1.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

가.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·팻말·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.

나.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(欺罔)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.

- 1)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 국가명산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“우리 농산물만 취급”, “국산만 취급”, “국내산 한우만 취급” 등의 표시·광고를 한 경우
- 2)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 또는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“국내생산”, “경기특미”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
- 3) 계사판 등에는 “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”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으로 표시하거나,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
- 4)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수입국가명산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판매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수입국가명산을 판매하는 경우

2.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

가.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,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. 나.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.

- 1) 수입국가명산과 국내산을 진열·판매하면서 수입국가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
- 2) 수입국가명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
- 3)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,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을 꺼내 주는 경우